

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[과태료 부과 사전통지(의견진술 및 자진납부)] 공시송달 공고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등기발송하였으나, ‘폐문부재’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8. 31.

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장인



- 1. 건 명: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
- 2. 근 거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,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	법인등록번호	주소	대표	과태료 부과 예정액	공시송달 내용
대영엠이씨(주) (현장명: (가칭)남양1중 교사신축 소방공사)	2001-11-*****-0	경기도 부천시 역곡로 38, 3층 (역곡동)	이00	1,000,000원 (자진납부시 800,000원)	'(가칭)남양1중 교사신축 소방공사'에서 발생한 2025년 12월 퇴직공제부금 474,5000원을 미납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

- 4. 공고기간: 2026. 8. 31. ~ 2026. 9. 14.(15일간)
- 5. 납부 등 문의: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노동기준조사1과(담당: 김영훈, 031-259-0338))